

2019학년도 2기 방과후수업 초과 시수(안)

안건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9.08.16.
제안자 : 학교장
제안설명자 : 교육연구부장

1. 제안사유

2기 방과후수업 시수가 담당 수업 시수 기준 30% 이내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주문형태의 수업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인정됨

2. 근거

현직교원의 경우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주당 수업 시수로 과도한 프로그램을 담당해서는 안 됨

-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시수의 30% 이내 (방학기간은 담당수업시수의 1.3배 이내)로 참여 권장

*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현직교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및 교무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안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

- 2019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13쪽(서울시교육청 배부) -

3. 담당 시수 초과 방과후수업 내용 및 사유

교사명	담당 시수	방과후 수업 초과 내용 및 사유				
		대상	시간	강좌명	장소	기타
우상구	14시간 (부장 교사)	1, 2학년	월~금 1교시	축구기초게임반	대주관	주문형강좌
		1, 2학년	월~금 2교시	탁구기초반	대주관	주문형강좌
		1학년	월~금 3교시	바디서킷반	체력단련실	주문형강좌
		* 1주 7시간(14시간 기준 2.8시간 초과) * 체육계열 진학 희망 학생 주문형 수업 운영으로 불가피하며, 업무 처리에 지장 없음 인정				